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477

발의연월일: 2024. 11. 12.

발 의 자: 박형수 · 김기현 · 이종배

엄태영 • 유상범 • 구자근

김소희 · 서일준 · 김석기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쟁, 재난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최초라고하는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상황임.

현행법에서 휴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보험료 전부를 면제하도록 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출산 장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본문 중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54조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항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2. 제54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3. 제5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휴직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소득 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 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 우
- 3. 제1항제4호의 휴직기간이 매월 1일에 만료된 경우 제75조제1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당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보험료를 면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4조(보험료의 면제) ① 공단은	제74조(보험료의 면제) ①
직장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u>다음 각 호의</u>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하는 경우(같은 조 제2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	
<u>서 같다)</u> 그 가입자의 보험료	
를 면제한다. 다만, <u>제54</u> 조제2	<u>মাই</u>
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	
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	
를 면제한다.	
<u><신 설></u>	1.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
	우(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u>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u>
	<u>한정한다)</u>
<u><신 설></u>	2. 제54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
	<u> 우</u>
<u><신 설></u>	3. 제5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
	<u> </u>

<신 설>

- ② 지역가입자가 제54조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 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제71조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제72조에 따른 재 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면 제나 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하 여는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 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 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 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 니하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 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u>년</u>	현 이형	<u> </u>	자녀	를 엉	· 당육하기
<u> 우</u>	하여	휴직	하는	경우	
2			<u>;</u>	제1항	제1호부
터	제3호	.까지	<u> </u>		
					·
3					
	<u>다음</u>	· 각	호에	따라	적용힌

다. <단서 삭제>

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

1.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없어진 경우

2.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 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 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 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신 설>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 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 까지 적용한다.
-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휴직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 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소득월액 및 재산보 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아니 한다.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가입 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 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 1. ~ 4. (생 략)
- 5. 휴직자 <단서 신설>
- 6. (생략)
- ②·③ (생 략)

3. 제1항제4호의 휴직기간이 매
월 1일에 만료된 경우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①
<u>.</u>
1. ~ 4. (현행과 같음)
5 <u>다만, 제74조제1항제</u>
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u>한다.</u>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